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50
----------	------

2024년 6월 28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4. 3. 이소라 의원 외 23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4. 4. 8.

다.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24년 6월 28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최근 공무원 검직이 문제가 되어 일부 부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논란이 예상되는 검직 신청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하는 등 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공무원 검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는 상황임.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검직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공무원 검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복무조례를 두고 있어 서울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겸직 허가 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제3항의 신설).
- 서울시의회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35조
제4항의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2.14. ~ 2024.2.18.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직에 대해 겸직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임.

2 겸직허가 시 엄격한 심사 규정 도입(안 제35조제3항)

가. 지방공무원 겸직금지 및 허가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¹⁾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제10조 본문의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및 영리목적이 없는 계속성 있는 업무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소속 기관 장의

1)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사전허가로 겸직이 가능함.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54호, 이하 “예규”라 한다.)에서는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청으로 의장이 해당 공무원의 업무 내용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 (신청)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기반으로 겸직허가 신청.

- (심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복무담당 부서에서 복무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의장(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이 중, 특히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 ※ 예규에 따라 겸직심사위원회가 심사할 대상은 ▲인터넷 개인방송,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직,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겸직허가 결정) 의장은 해당 공무원의 업무 내용 및 성격 등을 겸직금지 및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²⁾

- ※ 2024년 시의회사무처 겸직허가자는 총 11명이며 이 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는 1명이고 그 밖에는 외부 심의회 위원, 대학 강사 등임.

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 개정안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겸직심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허가권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2) 추가적으로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겸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겸직 활동을 점검할 수 있음.

- 예규에서는 이미 이들 직무에 대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중 <검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검직허가 후 종사 가능
 -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검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검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검직허가를 받아야 함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검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력을 저해할 경우 검직 불가

- 따라서 이들 직무에 대해 검직심사를 엄격히 하여 공무원의 공무수행상 공정성 확보 및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예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 외에도 기관·단체 임원, 부동산 임대, 외부강의, 블로그 활동, 야간 대리운전 등 직무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검직허가 현황 공개(안 제35조제4항)

-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검직허가 현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며,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의 취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2023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 중 복무 관련 정보는 공개가능 정보로 분류하고 있으며,³⁾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인식별 정보(성명 등)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경우는 부분공개 하도록 함.
- 특히,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신고한 실적 등에 대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 때에는 부분공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⁴⁾
-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허가제도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중립의무와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규제해 공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대시민 신뢰도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4 종합검토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겸직 허가 시의 주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위 대상 직무가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3) 서울특별시, 「2023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2022.12.), 169면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공무원 복무 관련 정보 및 업무분장, 휴가일자, 직무수행 관련 휴가사유 등을 포함하고 있음.

4) 서울특별시, 「2023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2022.12.), 172면.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한 것임.

- 한편, 예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검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사무처의 경우 별도의 ‘검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의회사무처는 향후 검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외에도 부동산 임대·블로그 활동 등 검직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직무에 대하여 심사 및 허가 시 주의를 다해야 할 것임.
- 검직허가 현황에 대한 공개에 관해서는 현황 공개에 대한 상위법령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대시민 신뢰도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부분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정보들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참고] 예규에 따른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 사례

(기관·단체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 공무원 친목단체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
 -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

-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지원'하기 전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 겸직허가 후 지원하였으나 선발이 되지 않은 경우는 겸직 허가 취소로 처리
-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겸직 금지

(외부강의)

-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환이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판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본문의 금지요건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 수행 등에 반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 검직 불허

※ 허가권자는 검직허가 신청자가 강의하려는 과목·강의기관 등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되, 직무수행과 관련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 허용

-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능률, 공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용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

- 방송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집합식 강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 지속성이 없으므로 검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자료 및 영상 업데이트, 질의답변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의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검직허가를 받아야 함

(기 타)

○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검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검직허가를 받아야 함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회·연 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 블로그 활동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검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 : 직·간접 광고) 등 금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검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검직금지

※ (예)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지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나.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35조제3항의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를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해 규율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여 심사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함.

8.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8명, 찬성 8명)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50 관련
----------	------------

제안년월일 : 2024년 6월 28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검직허가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35조제3항 중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를 지방공무원의
검직허가에 관해 규율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여 심사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5조제3항 중 “관하여”를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
규」를 준용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5조(겸직허가) ①· ②(생략) <u><신설></u>	제35조(겸직허가) ①· ②(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시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 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 을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에 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 에 대한 겸직허가 현 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겸직허가) ①· ②(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 -- 대해 「지방공무원 복 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여 -----. ④(개정안과 같음)
<u><신설></u>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장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견직허가 시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견직허가 현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검직허가) ①·② (생략)	제35조(검직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의장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검직허가 시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④ 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검직허가 현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u>